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 윤 숙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『장애인복지법』 과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신청대상자를 독립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(안 제4조)
- 나. 상위 관계 법령 근거 조항 정비 및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 에 따라 용어정비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『장애인복지법』 을 비롯한 근거법령 변경과 상위법의 범명변경,

또한,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 시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근거법령 개정 등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)

- '08. 1. 18자로 『모자복지법』이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으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우선 허가대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근거규정(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)을 삽입함

나. 우선 허가대상자 범위확대(안 제4조제1항)

- 장애인등록에 관한 『장애인복지법』 인용규정 변경사항과 우선 허가대상자 범위확대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

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,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**붙임 :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**